

UCP 해설

유 하상

제4조 신용장과 계약

제4조

■ 제4조 조문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a.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약속은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발행의뢰인에 의한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 받지 아니한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신용장과 계약

제4조

■ 제4조 주요 내용

①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토대를 두고 그 계약의 한 부분으로 성립하지만, 신용장 거래 자체는 그 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은행의 서류 심사시 거래에 대한 전문성 문제, 처리 비용과 시간문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급 수단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장점이 훼손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인식에 근거

- 신용장 독립성 및 추상성의 예외(fraud rule)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기 또는 위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해 신용장의 대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원칙

제4조 신용장과 계약

제4조

■ 제4조 주요 내용

② 과도세일 명세 금지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 계약이나 견적 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과 기초계약간의 독립성 원칙 구현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신용장을 발행할 때 발행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 개설 의뢰인의 신용장의 일부분으로써, 계약서 사본이나 proforma invoice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개설 은행이 제어해야 함.

- 예컨대 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과도한 상품 명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45A(DESCRIPTION OF GOODS) :

45,300 kgs of stainless steel wire SUH660(bond coated) **as per offer NO. 100114852** dated June 22, 2010 a copy which is being sent by express courier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credit.

이처럼 OFFER를 추가로 보냄으로써 신용장에 과도한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장 당사자에게 실질관계와 큰 상관없이 서류 심사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어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어긋나므로 신용장 개설시 억제되어야 한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제5조

■ 제5조 조문 해석

제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① 신용장의 추상성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 신용장 거래의 본질이 서류상의 거래이며 그 서류를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라는 표현을 은행이란 표현으로 한정. 은행은 서류상의 내용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자 또는 개설의뢰인을 위해 행동한다. 한편 은행은 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과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물품이 개설의뢰인에게 인도되고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개설은행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익자는 물품이 개설의뢰인에게 인도되었으므로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제5조

■ 제5조 조문 해석

사례 1 :

신용장 조건 : 선하증권 1통을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제시할 것. 이 신용장하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는 서류를 개설은행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원본 선하증권의 일부를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직접 제시 여부에 상관없이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시킬 경우 수익자는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하자의 여부는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례2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 대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의 실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제5조

■ 제5조 조문 해석

사례 3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그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례4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 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이 경우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개설의뢰인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제시되는 경우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또한 그로 인하여 신용장이 취소불능에서 취소가능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원칙에도 반한다 볼 수 없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조문 해석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 a. 신용장에는 그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을 또는 그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발행은행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 b.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 c.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c.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 d.
 - i.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 기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기된 유효 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 기일로 본다.
 - ii.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의 장소는 제시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의한 제시장소는 모든 은행의 장소이다. 발행은행의 장소가 아닌 제시장소는 발행은행의 장소에 추가된다.
- e. 제29조 a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제시는 유효 기일에 또는 그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①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익자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의 이용가능성을 모든 은행(any bank)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매입신용장밖에 없었는데 UCP 600에서는 모든 신용장으로 확대되었다.

지정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반드시 지정의 승낙 여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정은행이 단순히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지정은행이 지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신설함

종전의 조항에는 없던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지정은행이 서류의 제시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지급이나 인수를 하거나(honour) 혹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반드시 발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②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 조항이 없어 사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에 사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문면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용방법에 따른 신용장의 유형

- Sight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with ABC Bank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지급신용장)
- Deferred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at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with ABC Bank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연지급신용장)
- Acceptance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s at 60 days after sight.(인수신용장)
- Negotiation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매입신용장)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연지급신용장

- 1) 대개의 경우 수출지의 연지급 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 은행일 때 사용된다.
- 2) 기한부 신용장으로만 사용된다.
- 3) 무어음 신용장. 본래 기한부 거래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4차개정(UCP 400)에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지정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연지급 약정서를 수출상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수 신용장과 동일. 그러나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수출상은 환어음을 할인 받아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의 연지급 약정서를 담보로 선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UCP 600에서도 지정은행이 연지급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지급신용장에도 할인 허용규정 신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 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으로, 즉, 연지급은행도 만기 이전에 선지급이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 인수 신용장

- ✓ 수익자가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부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은행으로 지정된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 ✓ 개설은행이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심사한 후 개설은행이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가 된 이상 만기에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약정된 경우 그 지정된 다른 은행이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 그러나 만일 지정은행이 어음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대신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 ✓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신용장에서 인수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인수은행이 인수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는 신용장상 당연한 청구권이지만, 새로이 개설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 매입신용장

- ✓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추심 전에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서류 및/또는 환어음을 제시하면 수익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매입은행)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 ✓ 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어음 없이 서류만의 매입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경우 보증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수익자의 약속서만에 의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 ✓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개설은행은 최종 지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개설은행은 지급하였지만 개설의뢰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할 경우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러나 단순한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이 부도 반환된 경우에 매입의뢰인, 환어음발행인 등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상환청구권이 없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 ③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사용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필요 서류의 하나로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환어음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함
- ④ 신용장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의무 이행 또는 a입을 하기 위해 명시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최종 기일로 간주된다.(UCP 500 제42조 a 항)
- ✓ 한편 서류를 제시하는 것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완료하는 것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효 기일까지 지급, 인수,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일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최종일로 하면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수익자가 미리 예상하기가 곤란하여 수익자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효기일을 제시를 위한 최종일로 규정하게 되었다.
 - ✓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원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류제시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ISBP 20항) 상업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원본 제시가 요구되지 않았다면 수출상이 운송서류 원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에게 직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선적일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6조

■ 제6조 주요 내용

⑤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을 제시를 위한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도 제시를 위한 장소로 포함된다.

수익자는 직접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시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유효기일 이내이며,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이내여야 한다.

⑥ 유효 기일이나 제시를 위한 최종 기일의 연장을 설명하는 제29조 a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직접 또는 수익자를 대신한 은행 등의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에 대한 보호 또는 권한부여 문구.(7조, 8조 및 12조(b)) 특히, 연지급용장의 지정은행도 포함하여 명시.

☞ 7조 (c) 및 8조 (c) 와 함께, 지정 은행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개설 은행이나 개설 의뢰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항임. 특히,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 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연지급 약속(D.P.U)에 대한 사전 지급이나 구매(purchase)에 대해 수권을 주는 것으로 규정함.